

예 산 총 칙

2010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220,335,457	6,610,064
일반회계	208,644,053	6,259,322
특별회계	11,691,404	350,742
기타특별회계	11,691,404	350,742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597,000	17,91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257,273	7,718
주차장특별회계	9,753,350	292,601
기반시설특별회계	1,083,781	32,513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579,411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,200백만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